

#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03. 24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과 규칙안이 상호 중복된 사항이 있어 규칙안을 폐지하여 조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"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" 제4조 제3항 임용자격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(안 제4조제3항)
- 나. "직종의 신설등으로 별표(제4조제3항)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" 토록 신설(안 제4조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 예고 : 해당 없음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임용자격)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으로 임용될 수 없다.</p> <p>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4조(임용자격) ① 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.</p> <p>④ 직종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한다.</p> <p>【별표】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임용 자격기준</p>

##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

### 1. 일반행정분야

직무구분 및 직위	상당계급	직무내용	임용자격 기준
통역원	6급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국인과의 통역</li> <li>○ 외국서적 및 문서 번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4년제 대학이상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당해외국어에 능통하고 당해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자</li> <li>○ 4년제 대학 학위소지자로서 당해 외국어에 능통하고 당해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</li> <li>○ 일반직 또는 별정직 7급상당공무원으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통역원으로 근무한 경력자</li> </ul>
공기업 회계요원	7급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기업 회계자금 관리</li> <li>○ 공기업 회계세입 세출결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4년제 대학 회계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자</li> <li>○ 전문대학 회계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</li> <li>○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7년이상 실무경력자</li> </ul>
	8급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기업 회계자금 관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4년제 대학 회계학과 졸업자</li> <li>○ 전문대학 회계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자</li> <li>○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</li> </ul>

## 2.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

상당계급	자격중 소지 (민간경력)	관련분야 공무원 경력	관 련 학 위 (민간경력)
4급	○기술사 - 7년	○5급상당 - 5년	○박사 - 3년 ○석사 - 7년 ○학사 - 10년
5급	○기술사 ○기사1급 - 7년	○6급상당 - 4년	○박사이상 ○학사 - 5년 ○기타 - 7년
6급	○기능장 ○기사1급 - 4년 ○기사2급 - 7년 ○기능사1급 - 7년 ○다기능기술사 - 7년	○7급상당 - 3년	○석사 - 3년 ○학사 - 5년 ○기타 - 7년
7급	○기사1급 - 1년 ○기사2급 - 4년 ○기능사4급 - 4년 ○다기능기술사 - 7년	○8급상당 - 3년	○석사이상 ○학사 - 3년 ○전문대 - 5년 ○기타 - 7년
8급	○기사1급 ○기사2급 - 1년 ○기능사1급 - 1년 ○다기능기술사 - 4년	○9급상당 - 2년	○박사이상 ○전문대 - 3년 ○기타 - 5년
9급	○기사1급 ○기능사1급 ○다기능기술사	○기능직10등급이하	○전문대이상 ○기타 - 3년